

##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정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정이유서

### ◇ 제 · 개정 이유

가.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, 2021. 7. 27. 공포·시행)에 따라 신설·개편 조직의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

나. 국·과간 업무조정·변경·신설 및 기타 미비사항 수정

### ◇ 주요내용

가.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(안 제18조~제22조의2)

-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, 상표특별사법경찰과, 부정경쟁조사팀 신설·개편 및 사무분장 신설·변경 등 반영

나. 정보고객지원국 과간 업무조정 반영(안 제23조~제25조, 제28조)

- 정보고객지원국 과간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 신설·변경 등 반영

다. 국·과간 업무조정 및 신설(안 제13조, 제14조, 제17조, 제37조~제38조)

- “특허공제사업” 및 “대학 및 공공연 산업재산권 역량 강화 지원“

업무를 각각 산업재산활용과 및 산업재산창출전략팀으로 조정하고  
“담보 산업재산권” 업무를 산업재산활용과에 신설

- 디자인 신분류 시행에 따라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생활디자인심사과와  
산업디자인심사팀의 분장사무 조정

다. 기타 미비사항(별표1)

- 특허심사부서별 담당 특허분류표 현행화